

[별표]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

1. 원칙

- 가.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마련된 다음의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, 해당하는 점수에 상응하는 정도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.
- 나.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을 또는 부과기준금액은 위반행위별 세부평가기준표의 평가에 의하여 산정된 점수에 비례하여 정할 수 있다.
- 다. 위반행위가 각 고려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.
- 라.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세부평가기준에서 고려하지 못하였거나 고려의 정도가 충분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위 기준과 달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위 기준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.

2.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

- 가.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·광고행위

중대성의 정도	산정점수	부과기준율 (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)	부과기준금액 (관련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)
매우 중대한 위반행위	2.4 이상	1.8% 이상 2.0% 이하	4억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
중대한 위반행위	1.6 이상 2.4 미만	1.5% 이상 1.8% 미만	3억5천만원 이상 4억5천만원 미만
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	1.3 이상 1.6 미만	1.0% 이상 1.5% 미만	2억5천만원 이상 3억5천만원 미만
	1.3 미만	0.1% 이상 1.0% 미만	5백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

〈사업자들의 부당한 표시·광고행위 중대성 세부평가기준표〉

고려사항		부과수준	상(3점)	중(2점)	하(1점)
		비중			
위반 행위 내용	부당한 표현의 내용	0.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품의 성분·성능·효과 등 인체 또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동산 또는 거래조건 등 재산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(3점) 또는 중(2점)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	부당한 표현의 정도	0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당한 표현이 표시·광고 내용 중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당한 표현이 표시·광고 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당한 표현이 표시·광고 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사항이 아닌 경우
	부당이득 발생 정도/피 해 발생 정도	0.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반행위의 지속기간, 시장의 구조, 관련상품의 범위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현저한 규모의 부당이득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소비자의 신체·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<p><예시>부당광고 이후에 매출액(계약, 판매실적 등)이 급증하였거나, 광고내용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생명, 건강 등 신체의 안전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반행위의 지속기간, 시장의 구조, 관련상품의 범위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상당한 규모의 부당이득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소비자의 신체·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<p><예시>부당광고 이후에 매출액(계약, 판매실적 등)이 있거나, 광고내용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생명, 건강 등 신체의 안전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(3점) 또는 중(2점)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<p><예시>부당광고 이후에 매출액(계약, 판매실적 등)이 없거나, 계약 해약, 해지, 환불 등이 대부분 이루어진 경우</p>
위반 행위 정도	당해 부당한 표시·광 고의 규모	0.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광고비 3억원 이상 • 광고횟수 20회 이상 • 광고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광고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• 광고횟수 10회 이상 20회 미만 • 광고가 1개월 초과 1년 미만 지속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광고비 1억원 미만 • 광고횟수 1회 이상 10회 미만 • 광고가 1개월 이내에 끝난 경우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표시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표시가 3개월 초과 1년 미만 지속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표시가 3개월 이내에 끝난 경우
부당한 표시·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	0.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국적 광고로 TV, 라디오, 신문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국적으로 배포된 전단, 팸플릿 등 TV, 신문, 지하철 등을 통한 지역적 광고 인터넷 광고 당해 상품, 용기·포장에 표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부지역에 한정 배포된 전단, 팸플릿, 안내장 등 표시판에 표시

나. 사업자단체의 표시·광고 제한행위

중대성의 정도	산정점수	부과기준율 (연간예산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)	부과기준금액 (연간예산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)
매우 중대한 위반행위	2.2 이상 3.0 이하	125% 이상 140% 이하	4억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
중대한 위반행위	1.6 이상 2.2 미만	105% 이상 125% 미만	3억5천만원 이상 4억5천만원 미만
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	1.0 이상 1.6 미만	70% 이상 105% 미만	5백만원 이상 3억5천만원 미만

〈사업자단체의 표시·광고 제한행위 중대성 세부평가기준표〉

고려사항		부과수준	상(3점)	중(2점)	하(1점)
		비중			
위반행위 내용		0.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상파TV, 케이블TV, 라디오, 신문·잡지, 온라인, 기타(옥외광고 등)의 6대 광고매체중 4개 이상의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게재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• 가격, 품질 등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상파TV, 케이블TV, 라디오, 신문·잡지, 온라인, 기타(옥외광고 등)의 6대 광고매체중 2~3개의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게재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• 특정 명칭이나 표현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로서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상파TV, 케이블TV, 라디오, 신문·잡지, 온라인, 기타(옥외광고 등)의 6대 광고매체중 1개의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게재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• 그외 광고의 표시 방법·수단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로서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
위반행위정도	단체 주도	0.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자단체의 적극적 주도하에 이루어진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자단체와 구성사업자들의 요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구성사업자들의 요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경우
	위반행위의 파급효과	0.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한행위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한 규제조항이 있고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• 제한행위의 대상이 되는 구성사업자의 범위가 전국 단위인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한행위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한 규제조항이 있거나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경우 • 제한행위의 대상이 되는 구성사업자의 범위가 시도 단위인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(3점) 또는 중(2점)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• 제한행위의 대상이 되는 구성사업자의 범위가 시군구 단위인 경우